

[별 표]

## 관리대상 물자·업체 및 기관(제2조관련)

구 분	범 위
1. 관리대상 물자	가.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 설비, 장비 등 나. 삭제 <2014.3.10.> 다. 삭제 <2014.3.10.>
2. 관리대상 업체 및 기관	가.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,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나. 삭제 <2014.3.10.> 다. 삭제 <2014.3.10.> 라. 삭제 <2014.3.10.> 마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바. 삭제 <2014.3.10.> 사. 삭제 <2014.3.10.> 아.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.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 및 통신관련 단체 및 협회